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19. 03. 05.(화)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

정 관 변 경 보 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

I. 변경이유

- 市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에 따른 임원임기 정비를 통해 임원인사의 통일성 및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市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 통보’ (2019.01.16.)
 - 개선사항 : 출연기관 임원 연임관련 개정 (3년 단위 연임 → 1년 단위 연임)
- 상위규범과의 정합성 반영 및 용어 정비

II. 주요내용

1 상위규범과 정합성 반영 [제4조]

- 상위규범(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 삭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4조 (기본재산)	‘보증료 등 기타 수입’ 기본재산 포함	- 삭 제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2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한 임원임기 정비 [제10조]

□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 통일 및 1년 단위 연임 운영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0조 (임원의 임기 및 해임)	- 감사 임기 2년 - 임원 연임 가능	- 감사 임기 3년 - 임원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용어 정비

□ 법령명 표기 정비

○ 법령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17.12월)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조 (설립과 명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 (보증의 한도)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업무의 위탁 등)	-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 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Ⅲ. 시행일 등

- **시행일** : 중소기업부 장관 승인이 있는 날
- **경과조치** :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 정관의 임기에 따르되, 연임의 경우 시행 후 정관에 의함
- **다른 제규정 개정** : 법령명 표기 정비에 따른 정관의 변경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붙임】 정관 新·舊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新·舊 條文 對比表

현 행	개 정(안)
<p>정 관</p> <p>제1장 총 칙</p> <p>제1조(설립과 명칭) 이 법인은 <u>지역신용보증재단법</u>(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제2조(목적)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시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u>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u>(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각호의 경우에는 이외의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p> <p>제3조 -- (기재 생략) --</p> <p>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p> <p>1. ~ 5. -- (기재 생략) --</p> <p>6. <u>보증료 등 기타수입</u></p> <p>제5조~제6조 -- (기재 생략) --</p>	<p>정 관</p> <p>제1장 총 칙</p> <p>제1조(설립과 명칭) 이 법인은 「<u>지역신용보증재단법</u>」(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제2조(목적)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시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u>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u>」(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각호의 경우에는 이외의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p> <p>제3조 -- (현행과 같음) --</p> <p>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p> <p>1. ~ 5. -- (현행과 같음) --</p> <p>6. -- (삭 제) --</p> <p>제5조~제6조 -- (현행과 같음) --</p>

현 행	개 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임 원</p> <p>제7조~제9조 -- (기재 생략) --</p> <p>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연임할</u>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경우에 그 임기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p> <p>② -- (기재 생략) --</p> <p>③ 감사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며 <u>연임할</u> 수 있다.</p> <p>④~⑥ -- (기재 생략) --</p> <p>제11조~제14조 -- (기재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임 원</p> <p>제7조~제9조 -- (현행과 같음) --</p> <p>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1년 단위로 연임될</u>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경우에 그 임기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p> <p>② -- (현행과 같음) --</p> <p>③ 감사의 임기는 <u>3년</u>으로 하며 <u>1년 단위로 연임될</u> 수 있다.</p> <p>④~⑥ -- (현행과 같음) --</p> <p>제11조~제14조 -- (현행과 같음) --</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이사회</p> <p>제15조~제21조 -- (기재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이사회</p> <p>제15조~제21조 -- (현행과 같음) --</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업 무</p> <p>제22조~제23조 -- (기재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업 무</p> <p>제22조~제23조 -- (현행과 같음) --</p>
<p>제24조(보증의 한도)</p> <p>① -- (기재 생략) --</p> <p>② 재단이 동일한 소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8억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62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소기업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 최고한도의</p>	<p>제24조(보증의 한도)</p> <p>① -- (현행과 같음) --</p> <p>② 재단이 동일한 소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8억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62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소기업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 최고한도의</p>

현 행	개 정(안)
<p>금액을 정할 수 있다.</p> <p>제25조~제26조 -- (기재 생략) --</p> <p>제27조(업무의 위탁등)</p> <p>① 재단은 금융회사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③ -- (기재 생략) --</p> <p>제27조2 -- (기재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회 계</p> <p>제28조~제35조 -- (기재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해 산</p> <p>제36조~제37조 -- (기재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일 등)</p>	<p>금액을 정할 수 있다.</p> <p>제25조~제26조 -- (현행과 같음) --</p> <p>제27조(업무의 위탁등)</p> <p>① 재단은 금융회사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u>「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u>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u>「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③ -- (현행과 같음) --</p> <p>제27조2 -- (현행과 같음) --</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회 계</p> <p>제28조~제35조 -- (현행과 같음) --</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해 산</p> <p>제36조~제37조 -- (현행과 같음)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16)</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된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 정관의 임기에 따르되, 연임의 경우에는 시행 후 정관에 의한다.</p>

현 행	개 정(안)
	<p>제3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법령명 표기 정비에 따른 정관의 변경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p>